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403호

「공항안전운영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공항안전운영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인천공항 토잉카 정비작업 중 사망사고('22.4.26)를 계기로 사고조사단을 운영하여 「지상조업 안전강화 보완대책('22.9.21)」을 마련하였으며,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서,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단 운영, 안전관리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사항을 「공항안전운영기준」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단 운영 등 규정(안 제181조 제6~7항)

- 공항보호구역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은 사고조사단 운영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중대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재발방지를

위하여 스스로 작업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작성한 안전관리
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 까지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,
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/>
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나. 보내실 곳 및 문의처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
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
- 전화 : 044-201-4344 / 팩스 : 044-201-5635
- 이메일 : ci9256@korea.kr